

입법예고

도 시 숲 등 의 조 성 및 관 리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산림청
(도시숲경관과)

1. 제안이유

도시숲등을 확대하여 국민의 보건·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,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435호, 2026. 3. 10. 공포, 2026. 9. 11. 시행)됨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규정(안 제7조의2 신설)

- 1) 산림청장은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해야 하고,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
- 2)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조성 규모 및 관리 수준, 도시숲등의 생태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도록 함

나. 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(안 제7조의3 신설)

선정된 우수 도시숲등에는 포상 및 홍보,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중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7.10 ~ 8.20, 40일)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2조제4항”을 “법 제12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12조제5항”을 “법 제12조제6항”으로 한다.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산림청의 누리집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해야 한다.

②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.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 규모 및 관리 수준
2. 도시숲등의 생태적 기능, 기후변화 대응력 및 탄소흡수 기능
3. 도시숲등의 이용도 및 접근성
4. 도시숲등의 조성 ·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

5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 이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7조의3(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)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포상 및 홍보

2.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
3. 그 밖에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(생 략)	제7조(가로수의 조성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법 제12조제4항</u> 에서 “「도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	② <u>법 제12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③ <u>법 제12조제5항</u> 의 가로수의 조성·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.	③ <u>법 제12조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등)</u> ① <u>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산림청의 누리집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.</u> ② <u>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.</u>

<신 설>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다.

1. 도시숲등의 조성 규모 및 관리 수준

2. 도시숲등의 생태적 기능, 기후변화 대응력 및 탄소흡수 기능

3. 도시숲등의 이용도 및 접근성

4.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

5.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 이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7조의3(우수 도시숲등에 대한 지원시책)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포상 및 홍보

2.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
제1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·④ (생략)	3. <u>그 밖에 산림청장이 도시숲 등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제1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</u>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도시숲경관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24